

# 공정거래법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이기수 / 고려대 법대 교수

## 한성자동차(주)의 부당한 병행수입저지행위에 대한 건

1998. 6. 5.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8-110호/사건번호 9809경축1353

### 기초사실

1. 피심인(한성자동차주식회사)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Mercedes Benz)의 한국내 독점 수입·판매대리점으로서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외국산자동차값과 관련하여 보면 1996년을 기준으로 외국산자동차의 국내시장점유율은 0.63%에 불과하지만 전년대비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병행수입이 허용된 1996. 1. 1. 이후부터 독점수입업자의 시장독점력이 약화되면서 브랜드간·브랜드내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져 소비자가격이 하향조정되고 서비스 수준도 크게 향상되는 추세에 있다.

### 피심인의 행위

1. 피심인은 캐나다, 미국 등지의 자동차판매업자로부터 벤츠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인 (주)오토월드가 1995년 캐나다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수입·판매한 벤츠자동차 40여대의 차대번호(차량의 고유번호)를 추적·확인한 후 벤츠사와 미리 체결한 독점적 수입대리점계약서 제11조에 따라서 그 차대번호를 벤츠사에 통지하고 커미션을 청구하여 차량가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1대당 평균 약 150만원을 지급받았다.
2. 그에 따라 벤츠사는 피심인에게 3%의 커미션을 지급한 후 벤츠 캐나다사(현지법인)에 동 금액을 청구하고 벤츠 캐나다사는 (주)오토월드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캐나다판매업자에게 다시 3%의 커미션을 청구하였으며 이러한 커미션 부담 등으로 캐나다판매업자는 (주)오토월드에게 벤츠사의 판매를 증지한 사실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1. (주)오토월드의 벤츠자동차 병행수입을 보면 당해 제품은 독일 벤츠사에 의하여 직접 생산되어 정상적인 경로(독일 벤츠사의 캐나다 현지법인)를 통하여 유통된 제품으로서 “진정상품”이고 또 국내의 상표권자가 수입대리점관계로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으므로 관세청고시인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처리규정 제1-3조제5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적법한 병행수입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병행수입차량의 차대번호를 통지하여 동 자동차의 병행수입으로 자기의 독점 수입·판매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커미션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 가. 동 커미션은 순전히 피심인의 한국내 독점판매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으로 벤츠사가 피심인에게 주는 커미션금액을 보상받기 위해 (주)오토월드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외국 대리점에 받아내는 차량가격의 3%(커미션)는 미국, 캐나다 등 자동차의 경쟁적인 판매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의 대리점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사실상 (주)오토월드에게 더이상 차량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 나. 그외에도 피심인의 수입대리점계약서 제11조를 보면 벤츠사는 피심인의 판매지역(한국)에서 “타 판매업자에 의해 수행되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병행수입업자인 (주)오토월드에게 차량을 판매한 외국대리점은 커미션지불 외에도 영업활동에 지장이 되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 다. 실제로 1996년 외국대리점 Three Point Motors로부터 수입한 2대의 벤츠차가 적발되어 벤츠사에 통보되는 바람에 (주)오토월드와 동 대리점과의 병행수입거래가 중단되었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 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부당한 병행수입저지행위로 인정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위반된다.

## 법령의 적용 및 주문

피심인의 위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주문

1. 피심인은 자신이 독일 벤츠사로부터 독점 수입·판매하는 벤츠자동차에 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 공급자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점 수입·판매권에 의하지 않고 수입·판매된 벤츠자동차의 차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벤츠사에 통보하고 커미션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벤츠사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다른 경로를 통한 벤츠자동차의 수입을 실질적으로 저지하는 방법으로 병행수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5cm 크기로 평일(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문안 및 활자의 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 해설 및 평석

### 1. 머리말

이 심결례에서 문제되는 것은 진정상품병행수입에 관한 것이다. 병행수입의 문제가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게 된 데에는 다음의 사건이 있었다: 국내의 창고형 대형 디스카운트 판매점인 프라이스클럽은 기술 제휴업체인 미국의 '프라이스 코스트코사'로부터 최근 다량의 리바이스 청바지를 수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리바이스社'의 한국내 현지법인인 '리바이스 코리아社'는 세관에 이의 통관보류를 요청하였다. 세관은 리바이스 코리아社가 동 상표의 국내전용사용권자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이유로 리바이스 코리아社의 요청을 받아 들여 프라이스클럽의 수입청바지 통관을 보류하였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재정경제원의 관세청 고시도 개정<sup>1)</sup>되었다. 아래에서는 眞正商品並行輸入의 의의, 이에 대한 찬반론, 외국의 추세, 그리고 재정경제원의 관세청 고시에 대하여 차례대로 고찰하고 결론을 내린다.<sup>2)</sup>

## 2. 병행수입의 정의

진정상품병행수입(眞正商品並行輸入)이란 수입총대리점 또는 상표권 專用使用者를 통한 정상유통경로를 거친 수입과 이를 우회하여 제3자가 원상표권 소유자의 국내유통시장 또는 제3국의 시장에서 구입하여 오는 수입이 병행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생소한 현상이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행하여 왔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이를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이라고 부르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를 일반적으로 회색시장(Gray market)이라고 부르고 있다.<sup>3)</sup> 병행수입품은 상표권의 원소유자 또는 원소유자의 허락을 받은 제조업자로부터 나온 제품으로서 적법한 상표를 부착한 진정제품이기 때문에 모조품, 불법 복제품, 밀수품과 같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과는 다르며, 반면 통상적인 수입유통경로를 밟아서 일반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도 아니다. 따라서 암시장(Black market)과 백색시장(White market) 사이에서 거래되는, 즉 회색지대에서 거래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 3. 병행수입분쟁에 대한 찬반론

### 1) 긍정론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상표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조치로서 이는 상품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법으로써 보장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저해한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될 때에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병행수입의 금지는 결과적으로 시장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동일한 상표가 여러 나라에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나라마다 그 등록상표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여 준다면 상표권의 등록이 국제시장을 분할하는 수단이 되고 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국제적 가격차별화를 시도하

1) 재정경제원의 주된 논지는, 수입의 독점을 인정하면 소비자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병행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가격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고, 실제로 이로 인해 청바지의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렸다고 한다.  
 2) 병행수입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상조, 병행수입과 지적소유권의 한계, 통상법률(법무부), 1995년 12월(통권 제6호), 26쪽 아래 및 최순용, 병행수입과 상표권, 정상조 편, 지적재산권법, 홍문사, 1997, 519쪽 아래 참조.  
 3) Paul Goldstein,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Related State Doctrines, 3. ed., The Foundation Press, 1993, pp.974 ff.

여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할 것이다.

병행수입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제적인 가격 격차가 있기 때문이며 국제적 가격 격차는 상표권에 의한 독점적 지위의 남용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므로 병행수입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국제적 가격 격차가 축소되면 그와 더불어 상표권에 의한 국제적인 독점적 지위의 남용도 그만큼 방지되는 것이다.

## 2) 부정론

반면에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독점적 수입권을 갖고 있는 수입총대리점이나 상표권등록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진정상품의 수입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병행수입은 상표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은 상표등록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러한 적법한 권리의 침해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병행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법적 논리의 골자이다.

뿐만 아니라 상표권에는 상표를 시장에서 확립하기 위한 선전, 광고비, 그리고 확립된 상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표권은 일종의 투자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투자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병행수입금지를 주장하는 경제적 논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행수입이 허용되면 병행수입자는 상표권자의 투자에 대해서 일종의 무임승차(free ride)를 하는 셈이 되고 무임승차의 성행은 상표권자의 새로운 시장개척, 고객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동기를 저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3) 결론

결국 병행수입에 대한 논쟁은 한편에는 상표권의 권리보호를, 다른 한편에는 독점의 견제를 놓고 양자의 득과 실을 저울질하여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의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한 병행수입제도의 도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표권은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과도한 보호는 독점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 4. 외국의 추세

외국의 일반적인 추세는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활동의 국제화가 광범위하고 고도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실정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상표권을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 삼중 보호하여 주는 것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고 있다.

기업의 세계화, 경제행위의 무국경화가 가속화됨과 더불어 상표권도 다국적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의 권리행사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표권의 權利消盡<sup>4)</sup>이 인정되는 영역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 볼

4) 권리소진이란 개념은 지적재산의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특허권자는 관련상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나 대여의 청약 등을 독점하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만약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특허된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다시 이를 사용하거나, 대여 등을 할 때에도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을 일단 유효하게 행사한 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다 썼다고 보는 것이 권리소진이론이다. 상표권에도 동일한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다.

가피한 국제적인 추세로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도 관련법의 조문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 나라의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상표권, 특허권 등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시대상황의 변화를 잘 반영한 법 해석을 통해서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5. 재정경제원의 관세청 고시

개정된 관세청 고시는 일정한 조건하에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순수하게 수입만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인정하여 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와는 달리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품을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진정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세청의 고시는 행정청의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이고 이의 실질적인 판단은 법원에 달려있으므로 이후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러한 지침은 무시될 수도 있는 것이다.

## 6. 특허품의 병행수입의 문제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의 판례<sup>5)</sup>에 의하면 “각국에서의 특허권은 서로 독립된 것이고, 또 개개의 특허실시행위는 서로 독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을 원고가 위 약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하여 적법하게 스위스국에 수출함으로써 이미 행사되어 소진된 것이고, 그 후에 위 약품이 어떻게 유통 또는 소비되는가 하는 점은 원고의 제조, 판매행위에 기초를 두고 그 제품이 실수요자들에게 분배되는 과정에 불과하여 原告가 관여할 사정이 아니며, 위 약품을 被告(국제약품)가 원고로부터 직접 국내에 수입한 경우와는 달리, 이미 적법하게 이를 수입한 위 스위스국으로부터 피고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게까지 원고가 추급권을 행사하여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법리이다”라고 한다.

## 7.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은 두 가지가 있다. 미국과 독일법은 법에 일반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해석에 의하여 규제하는 형식이고, 우리와 일본법은 추상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告示함으로써 금지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전자는 거래계의 실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법적 불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告示를 통하여 열거한 행위만을 금지하므로 거래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포착하여 규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금지되는 행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6)</sup>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7가지로 열거하고 있으나, 그 유형 또한 추상적이므로

5)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81.7.30. 선고81가합466 '국제약품' 사건

6)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155쪽; 이남기, 경제법-공정거래법-, 1996, 340쪽 아래.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시행령별표에서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일반지정)와 특수한 사업분야에만 지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특수지정)로 구분된다. 특수지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지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조치기준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특정분야, 특정행위로서 보다 구체화한 것일 뿐이다.<sup>7)</sup>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유형	세부 유형	특수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 당연위법행위 기타의 거래거절	① 백화점업 ② 학습교재등의 판매업 ③ 주유소등 석유판매업 ④ 가맹사업(프렌차이즈) ⑤ 신문업 ⑥ 할인특별판매행위 ⑦ 경품류제공 ⑧ 공공건설공사-저가입찰 ⑨ 병행수입 ⑩ 국제계약상
차별적 취급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당연위법행위 집단적 차별	
경쟁사업자배제	부당염매 - 당연위법행위 부당고가매입	
부당한 고객유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거래상지위남용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상대방제한	
사업활동방해	기술부당이용 인력부당 유인·채용 거래처이전방해행위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7)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1997, 155쪽; 정주환, 한국경제법, 전정판, 1997, 114쪽; 손주찬, 경제법, 1994, 238쪽.

본 심결례에서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서 인정하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서 병행수입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sup>8)</sup>이 제정되어 있다.

그리고 관세청 고시로서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있다. 동 고시 제1-3조 제5호 단서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관장에게 상표권보호신청을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고 국내 상표권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가. 국내외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주식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 나. 외국상표권자가 ‘가’호의 관계에 있는 국내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 다만 국내전용사용권자가 당해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전용사용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8. 결론

지적재산권법은 독점의 허용과 경쟁의 달성이란 과제를 안고 있고<sup>9)</sup> 지적재산권제도와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경우 직접적인 관련하에 있다. 병행수입의 문제도 지적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이 연결되는 한 경우이다.

병행수입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의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수입총대리점의 상표권은 보호하여야 하지만 국경을 넘은 지적재산권의 전적인 보호가 지나친 보호이고 독점의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을 허용하여 그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에 의한 병행수입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심결례에서 문제된 피심인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독점권을 빌미로 병행수입행위를 결과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병행수입의 허용론의 견지에서 볼 때 부당하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도 불공정거래행위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한 점은 타당하다. 그런데 병행수입의 문제는 지적재산권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하는 바 병행수입의 찬성근거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제시가 없었다는 점 및 이 분야에서 특수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은 이 심결례의 미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

8) 1997.7.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7호.

9) 이에 대하여는 이기수의 6인 공저, 지적재산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6, 9쪽 참조.